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을 신설하며

직제시행규칙 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규정된 부분을 현행법에 따른 정식 명칭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8호 중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제14조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이용 활성화

제15조제3항제7호 중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를 “한국관광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제40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제2항 중 “운영지원과·연구기획과·자료관리과”를 “기획운영과·조사연구과·자료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지원과장”을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획과장”을 “조사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제46조제2항 중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을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36조의3”을 “제40조”로, “국악연구실장”을 “국립민속박물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진주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춘천박물관장”을 “진주박물관장·청주박물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23조의3항에 따른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별표 3 시설주사보 “4”를 “3”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3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18”을 “17”로 하고, 공업서기 17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3의2 시설주사보 “4”를 “3”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3 다음에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18”을 “17”로 하고, 공업서기 17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7 행정서기보 10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행정서기보 10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1”을 신

설하고 “공업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 행정서기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과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하고, “임업서기보 1”을 삭제하며, “방송통신서기보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⑩ (생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지방문화예술위원회</u>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u>지역문화예술위원회</u> ----- -----
9. ~ 28. (생략)	9. ~ 28. (현행과 같음)
⑫ · ⑬ (생략)	⑫ · ⑬ (현행과 같음)
제14조(체육국) ① · ② (생략)	제14조(체육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 ·</u> <u>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 지</u> <u>원</u>
16. (생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6.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 ·</u> <u>이용 활성화</u>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⑤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 ·</u>	<u><삭제></u>

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 지원

19.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 · 이용 활성화

20. (생략)

⑥ ~ ⑧ (생략)

제15조(관광정책국) ① · ② (생략)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 15. (생략)

④ ~ ⑦ (생략)

⑧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⑨ (생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 ⑥ (생략)

⑦ 유물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삭제>

20.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광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한국관광공사 -----

8. ~ 1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관련된 업무

⑨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생략)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생략)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운영지원과·연구기획과·자료관리과·전시운영과·교육과 및 교류홍보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기획과장·전시운영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④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 6. (생략)

⑤ ~ ⑧ (생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획운영과·조사연구과·자료관리과

-----.

③ 기획운영과장-----
-----.

1. ~ 8. (현행과 같음)

9.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조사연구과장-----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5명(5급 1명, 6급 4명),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공공부문 인력 직접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③ · ④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제4조제1항 · 제10조제1항 · 제24조제1항 · 제28조 · 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 · 디지털소통관 · 국립국어원장 · 국립중앙도서관장 · 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주박물관장 · 청주박물관장 · 춘천박물관장

9. ~ 14.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제40조-----

----- 국립민속박물관장-----
--.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진주박물관장 · 청주박물관장

9. ~ 14. (현행과 같음)

15. 제23조의3항에 따른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주사보	4	3	-1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신 설>	1	+1
·	·	·	
공업서기	18	17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 설>	1	+1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주사보	4	3	-1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신 설>	1	+1
·	·	·	
공업서기	18	17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 설>	1	+1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10		
공업서기보	1	<삭 제>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1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

(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10		
공업서기보	1	<삭 제>	-1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1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신 설>	1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 신서기보	<신 설>	1	+1
임업서기보	1	<삭 제>	-1
·	·	·	
·	·	·	
방송통신서기보	1	<삭 제>	-1
·	·	·	
·	·	·	